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적용 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역정부, 또는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나. 중앙 또는 지역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로 당사국의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4조 및 제9.7조는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 투자¹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0.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9.4 조 및 제 9.7 조의 적용은,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을 포함한 이 장은 제 8 장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또는
- 3)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다. 당사국 또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또는 보증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9.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9.4 조 시장접근

당사국은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²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9.5 조 현지주재

한쪽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9.6 조 비합치 조치

1. 제 9.2 조부터 제 9.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² 이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³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⁴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2조부터 제9.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부속서 9-가는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관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9.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GATS 제6조제4항의 국내 규제와 관련된 상호 의무에 주목하며, GATS 제6조제4항에 따라 모든 필요한 규범의 수립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확인한다. 그러한 규범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채택되는 한도 내에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규범들을 검토한다.

제 9.8 조 인정

³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⁴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9.3조는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 내 관련 기관이 체결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이 다음을 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교섭을 개시하는 것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내에 회합하는 것

다.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을 위하여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고

라. 협정 또는 약정의 타결 이후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7. 제 6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협정 또는 약정이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정을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기간 내에 그 협정 또는 약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제 9.9 조 임시 면허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2. 제 9.8 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을 개시하는 것

나. 부속서 9-나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회합하는 것

다.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협상에 있어 부속서 9-다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고

라. 양 당사국 각각의 영역 내 관련 기관에 의한 그러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3. 제 2 항라호에 언급된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기관이 비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 면허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존재를 신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합의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제 9.10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 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9.11 조 지불 및 송금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 및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 및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9.1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공급

그러나 제 8.45 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하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⁵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⁵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이 조들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할 것이 요구되는 대우는 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관련서비스까지 확장된다.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 17 조 및 제 2 조 각각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9-가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협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I 비합치 조치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의 수립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또한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부속서 9-나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수립할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부속서 9-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위한 지침

서설

이 부속서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을 개시하는 정부, 협상주체 또는 그 밖의 주체에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양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용될 것을 의도한다. 지침은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이하 "MRA"라 한다)의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부속서에 기재된 사례들은 예시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사례들의 목록은 예시적이며, 한정적인 것을 의도하지도 아니하고 양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의 승인을 의도하지도 아니한다.

제 1 절
협상의 수행 및 관련 의무

서설

제 9.8 조의 양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이 절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규정한다.

협상의 개시

1.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협상을 개시하는 의도
 - 나. 논의에 관여하는 주체 (예를 들면, 정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기관 또는 그러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또는 달리 권한이 있는 협회)
 - 다.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접촉선
 - 라. 협상의 주제(적용 대상 특정 활동), 그리고

- 마. 예상되는 협상의 개시 시점 및 제 3 자의 관심표명을 위한 예시적 일자

결과

2. 당사국에 의한 MRA 타결시, 그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새로운 MRA 의 내용, 또는
- 나. 기존의 MRA 에 대한 중대한 수정사항

후속조치

3.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 의한 후속조치는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 가. 협상의 수행 및 MRA가 이 장의 규정, 그리고 특히 제9.8조와 합치되는 것, 그리고
- 나. 그 당사국이 제9.8조제7항에 따라 MRA의 이행과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채택하고 행위를 취하는 것

단일 협상주체

4. 단일 협상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단일협상주체를 설립하도록 장려된다.

제 2 절 MRA 의 형식 및 내용

서설

이 절은 MRA 협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합의되는 경우 MRA 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규정한다. 이 절은 당사국이 MRA 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 전문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참여자

5. MRA 는 다음을 명백히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 가. MRA 의 당사자 (예를 들어, 정부, 국가 전문직 기관 또는 협회)
- 나. MRA 의 당사자 이외에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 그리고 MRA 에 관한 그들의 지위, 그리고
- 다. MRA 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위 및 권한 분야

MRA 의 목적

- 6. MRA 의 목적은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 의 적용범위

- 7. MRA 는 다음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특정 직업 또는 직함, 그리고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전문적 활동의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
 - 나. 관련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
 - 다. 인정 메커니즘이 자격, 출신 국가에서 획득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에 기초하는지 여부, 그리고
 - 라. 관련 전문직에 대한 임시적 접근, 영구적 접근, 또는 양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MRA 규정

- 8. MRA 는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인정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과 MRA 의 당사국 간 합의된 동등성 수준을 명백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MRA 의 정확한 조건은,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MRA 가 수립된 기초에 따른다. MRA 당사국의 다양한 지역 관할권에서의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상이한 점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MRA 는 MRA 당사국의 한 지역 관할권에서 부여된 인정의 다른 지역관할권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정의 적격성 - 자격

9. MRA가 자격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요구되는 최소 교육수준 (입학 요건, 학업기간 및 전공을 포함한다)
- 나. 요구되는 최소 경력수준 (면허취득 전 직무 훈련 또는 감독하의 전문 실습의 위치, 기간 및 조건, 그리고 윤리 및 징계 기준의 체계를 포함한다)
- 다. 통과된 시험, 특히 직업능력의 시험
- 라. 현지국에서 인정되는 본국 자격의 한도, 그리고
- 마. 예를 들어, 일정 기관에서 발급된 특정 학위 또는 증명서 목록을 나열함으로써, 또는 일정 자격수준의 보유로 일부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나 다른 활동의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출신 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인증되는 특정 최소요건을 언급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인정할 준비가 된 자격

인정의 적격성 - 등록

10. MRA가 출신 국가의 규제당국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 결정의 인정에 기초하는 경우, 그 MRA는 그러한 인정을 위한 적격성이 확립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11. 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현지국에서의 자격요건, 또는 현지 법, 관행, 기준 및 규제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 부족함이 있는 경우)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현지국에서의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요구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나.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MRA는 그 요건들이 수반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적성 검사, 현지국 또는 출신 국가에서의 추가 실습, 실무 훈련, 그리고 시험에 사용되는 언어)

이행 메커니즘

12. MRA는 다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가. MRA의 규정을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규칙 및 절차
- 나. 양 당사자간 대화 및 행정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 다. MRA에 따른 분쟁의 중재수단

13. 개별 신청자의 대우를 위한 지침으로서, MRA는 다음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 면허발급 절차, 현지국에서 충족되어야 할 추가적 요건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각 당사자의 중요 접촉선
- 나. 현지국의 관련 당국에 의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절차의 기간
- 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서류 및 제출되어야 하는 형식, 그리고 신청시한
- 라. 자격 및 면허와 관련하여 출신 국가에서 발급되는 서류 및 증명서의 접수
- 마. 관련 당국에 이의제기 또는 관련당국에 의한 검토 절차, 그리고
- 바.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수수료

14. MRA는 또한 다음의 약속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조치에 대한 요청이 신속히 처리될 것
- 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준비 시한이 제공될 것
- 다. 모든 시험 또는 검사가 합리적인 주기로 준비될 것
- 라. MRA의 조건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가 현지국 또는 기관의 비용에 비례할 것, 그리고
- 마. 실무 훈련을 위한 현지국에서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지국의 모든 약속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현지국에서의 면허 및 그 밖의 규정

15. 적용 가능한 경우,

- 가. MRA 는 또한 적격성의 확립에 이어 면허를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 및 조건, 그리고 그러한 면허가 수반하는 사항들(면허 및 그 내용, 전문직 기관의 회원자격, 전문직 또는 학문적 직함의 사용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자격 이외의 면허요건은,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사무실 주소, 설립 요건 또는 주거 요건
 - 2) 언어 요건
 - 3) 신원 및 재정상태의 증명
 - 4) 전문직 손해보험
 - 5) 상품명 또는 회사명칭의 사용을 위한 현지국 요건에의 합치, 그리고
 - 6) 예를 들어 독립성과 양립 불가성과 같은 현지국 윤리에의 합치
- 다.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MRA 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적용될 관련 법과 규정(징계 조치, 재정적 책임, 의무 등)
 - 2) 전문직에 대한 징계 관할권 및 모든 결과적인 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직무 규범과 전문직 기준의 시행
 - 3) 직무능력의 지속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
 - 4) 전문직의 등록 철회를 위한 기준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그리고
 - 5) MRA 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국적 및 거주 요건 관련 규정

MRA 의 개정

16. MRA 가 검토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의 세부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